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 년 경북경찰청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 년

○ 발주기관(원청) : 경북경찰청

○ 제조사(발급자)/제품명 : 아이펙스 주식회사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원청"은 발주자로서 "발급자"은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로서, 직접 또는 "발급자"의 파트너사를 통하여,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의 목적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낙찰자(발주기관에 대한) 가 공급하는 제품이 "발급자"가 제조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자"은 직접 또는 파트너사를 통하여 ,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대한 사항은 "발급자"(또는 파트너사)와 낙찰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 3 조(협의금액)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발급자"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과 "발급자"(또는 파트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낙찰자가 "원청" 대하여 일금 197,800,000 원(부가세포함) 이하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낙찰자와 파트너사는 협력한다.

※협약대상물품은 첨부 참조

제 4 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발급) "발급자"은 본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 질서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발급자"은 "원청"에 요청에 따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 년 10 월 일

"원청" 경상북도경찰청 (인)

경상북도경찰청장인

"발급자" 아이펙스 주식회사 (인)